

# 구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5. . .
발 의 자	이명희 의원 외 1인

# 구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이명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5. . .

발 의 자 : 이명희, 김민성 의원(2인)

찬 성 자 : 강승수·김근한·김낙관·김원섭  
김재우·김정도·김춘남·소진혁  
이지연·장미경 의원(10인)

## 1. 제안이유

구미시 노인인구는 2018년 기준 8.41%에서 2024년 기준 12.8%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노인의 수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가 낮아 서비스 질이 하락하는 경우로 이어져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노인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책무에 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 사업에 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라. 권익보장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나. 부서검토: 어르신복지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 구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구미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노인장기요양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구미시 장기요양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시장이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법 제35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요양요원의 책무)** 장기요양요원은 전문성 향상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이행률 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다음 세부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등

② 시장은 필요시 실태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사업)**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장)** ① 기관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기관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지도·감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단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2.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규모, 그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장기요양보험)** ①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 직무상 권리와 의무 등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④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

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 사실확인 조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조 례 명

구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주요 사항

- 책무에 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 사업에 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권익보장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 검토 결과

- 당초 장기요양요원은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지원되어 왔음
- 조례안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경우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노인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 질 향상
- 소요예산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문 제 점 : 해당사항 없음

## 구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사업)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예상되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4. 작성자

-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시설팀 박예빈(☎480-5162)